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주민세 재산분 부과관리 소홀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내 용

지방세 과세권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330㎡이상의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주민세 재산분을 과세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4조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소용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판청구’(행심 제2006-145호, 2006.4.24.)에 따르면 지상 공작물로서 외벽이 없고 층별 및 옥상바닥이 뚫린 철판구조로 되어 있는 철판조 주차장시설은 슬라브 지붕식과 같은 형태의 옥상과 기둥을 구비하고 있고 주차시설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건축물로서의 조건을 완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르면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⁴⁷⁾에 대하여는

47)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

세율(m²당 250원)의 100분의 20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세 재산분의 징수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세권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납세의무자의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않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철골주차장 시설, 체육시설 등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특히 오염물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2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동구 등 5개 구에서는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과세업무를 소홀히 하여 30건, 11,979,320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의 추징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서구청장, 남구청장, 북구청장, 광산구청장은**

[시정] 과세대상임에도 과세가 누락된 주민세 재산분 30건, 11,979,320원을 추징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를 말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